

서울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2039970(본소), 2016나2039987(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 매매잔대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2039970(본소), 2016나2039987(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가합11067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평화 오일 씨 공업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앤티

변론 종결 2017. 3. 8.

판결 선고 2017. 3. 31.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가합110670(본소),
2014가합115354(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 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기재 기계를 철거하라.

반 소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3쪽부터 제4쪽 사이의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 내지 6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시스템은 히터나 인버터를 이용하는 설비나 전등 등에는 절전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원고 공장에 설치된 기계들은 대부분 히터를 사용하는 프레스 기계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절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4. 19. 및 2013. 5. 14. 원고 공장에 있는 기계 중 일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하여 절전율을 측정한 다음, 원고에게 7% 이상의 절전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을 제2호증의 1, 2)를 제시하였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측정 결과를 제시받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계측 분석결과 절전율이 5.2%(guarantee rate)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이미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에도(제4조), 위 문구 바로 위에 수기로 "만약 설치 후 절전율이 5.2% 이상이 안 나올 때는 본 계약은 파기되며, 지급된 선금금 30%는 원고가 회수한다."라고 덧붙여 기재하였다.

○ 원고의 직원 A은 2013. 12. 7. 이 사건 시스템이 설치된 직후 실시한 절전율 측정 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시스템의 절전율 효과에 관한 피고 측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그 후 2013. 12. 10., 2014. 1. 18., 2014. 2. 20. 등 수회에 걸쳐 피고 측(코스모토사)의 입회하에 전력량계, 변압기의 부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절전율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절전 효과를 인정할 만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 그 후로도 원고는 피고 측에 수회에 걸쳐 절전율 측정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은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2016. 3. 9. 상호 합의한 측정방식에 따라, 원고 공장의 수전실 내 LV-2MA 판넬 뒤편 ACB 1차측 부스바에서 각자 분석기(EMS-9200K 장비 등)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스템의 절전율 측정검사를 2차례 실시하였다.

○ 당시 이 사건 시스템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30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30분간 절전율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1차 측정검사 결과, 적산전력량이 원고 측 분석기에서는 5.53%, 피고 측 분석기에서는 6.92% 각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시스템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40분,

꺼진 상태에서 40분간 절전율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2차 측정검사 결과에서도 적산전력량이 원고 측 분석기에서는 9.84%, 피고 측 분석기에서는 9.43% 각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제시한 절전율 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히터 등을 많이 사용하는 원고 공장의 특성상 이 사건 시스템이 실제로 설치되었을 때 절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고려하에 이 사건 시스템 설치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약정해제사유로 명확하게 정하였고,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절전율 5.2%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한편으로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잘못 조작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절전율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원고가 「상법」상 검수의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2016. 3. 9. 원고와 피고가 함께 실시한 절전율 측정 결과 이 사건 시스템을 가동하였을 때 적산전력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하 변동이 심했기 때문이므로, ▶ 당심에서 부하 변동이 가장 적은 곳을 선정하여, ▶ 원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50kW 미만의 모터를 가동시키거나, ▶ 원고 공장에 설치된 50KW 미만의 설비에 원재료를 투입하지 않거나 제품 생산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원고가 생산설비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작업량을 조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스템을 가동하여 그 가동 전후의 적산전력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절전율 확인 방법에 대하여 "시스템이 설치된 ACB(메인) 중 변동이 가장 적은 한곳을 선정해 전압, 전류, 유효전력, 피상전력, 적산전력을 시스템 작동 전후 1~2시간씩 계측하여 분석한다."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 공장이 평소처럼 가동되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부하 변동이 가장 적은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절전율을 측정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기계를 선별하거나 생산하는 제품량을 조절하는 등 인위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절전율을 측정하는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2016. 3. 9. 원고와 피고가 함께

측정을 실시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한 측정방식에 따라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감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기재 기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 고의영

판사최영은

판사주선아

별지